

용문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4. 10. 28. ~ 10. 31.(4일간)

 감사범위 : 2012. 11. 26.이후 업무전반

 감 사 반 : 감사담당 김종삼 외 5명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본 처분 18건(시정 9, 주의 9)

○ 재정상 조치

- 8건 1,568,760원

(회수 4건 1,443,000원 지급 1건 52,400원, 환급 1건 29,400원,
추징 1건 15,000원, 부과1건 28,960원)

지적사항

1. 직원출장 및 여비지급 부적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출장)에 의하면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하고,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소속직원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2~3명)의 공무원 대하여 출장 조치와 공용차량 운행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출장간 모든 직원에게 출장처리 및 출장 여비 지급
 - ▶ 개인자격으로 경조사에 다녀온 직원 2명의 출장여비 148,000원을 회수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2. 이장수당 지급 부적정

-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통·리장 변경시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장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수당 지급
 - ▶ 이장수당 지급시 정산 지급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3. 예산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1조(예산집행품의)에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에 대하여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시행시 시행 품의만 득하고 관급자재 구입 및 장비임차 품의를 생략하고 집행
 - ▶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시행시 시행 품의, 관급자재 구입 및 장비임차 품의를 득한 후 집행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4. 출납사무의 인계인수서 미작성

- 예천군재무회계규칙 제99조 및 예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납사무담당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 되는 경우와 1월 이상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4.1.27.일자 지출원 등 변동 시 인계인수서 미 작성
 - ▶ 이후 출납사무담당자 변동사항 발생 시 5일 이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5.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를 미 실시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년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시 환경미화원 ○○○에 대하여 휴가일수 착오계상으로 52,400원 미지급
 - ▶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 52,400원을 지급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6.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세출예산 집행 금지사항 10대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예산편성에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 외 4건, 856,000원을 집행하여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을 숙지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7.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준공검사자 임명 부적정

- 시설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도금액 1천만원 미만의 준공검사는 공사감독관으로 확인하고, 도금액 10억미만은 6급 공무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1천만원 이상 공사 14건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준공처리
 - ▶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8.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적용기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2014. 3. 17. (주)■■■■과 계약한 ◇◇◇보 용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설계 시 부대공에 레미콘 소운반은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 시에도 소운반은 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이나 정산 조치없이 준공급을 지급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460천원(제경비 포함)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46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9.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 2013. 3. 29. ◆◆◆◆(주) ○○○와 계약한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계 시 부대공에 레미콘 소운반은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 시에도 소운반은 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이나 정산 조치없이 준공급을 지급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450천원 (제경비포함)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450,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0. 공사비 미 정산 과다 지급

- 2014. 3. 13. ●●●●(주) ○○○과 계약한 ◇◇◇옹벽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계 시 부대공에 레미콘 소운반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 시에도 소운반은 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변경이나 정산조치 없이 준공급을 지급하여 도급액 기준으로 385천원(제경비포함)을 과다 지급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385,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1. 세외수입 수납금 지연 납부

-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수납금의 납입)에 따라 수납금의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3년부터 2014년 감사일 현재까지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및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 및 처리비용 23건에 대하여 익일까지 세입처리 하지 않고 최대 75일까지 지연 납부
 - ▶ 세외수입 수납금은 판매일 다음날까지 세입처리를 완료하고,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2.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 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재판정 통보는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최소 1개월전에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고, 기한내 미이행시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 하여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재판정 촉구 기한내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여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임에도 행복e음 시스템에 재진단 기한일을 누락하여 재판정 통보를 하지 않아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 누락된 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자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통보를 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인수인계 지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에 의하면 지문 채취를 완료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2013. 7월 ~ 8월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송부하지 않고 2월~3월 지연 송부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4.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위반자 과태료 부과 부적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2013년도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자 〇〇〇 외 1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입력오류 등 과태료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부과하여 29,400원의 과태료 과다 부과

▶ 과다 부과한 과태료 29,400원을 환급해 주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5. 이륜자동차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9조, 제101조, 제103에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 변경사항이 있거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양도양수 증명서 작성시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에도, 2013.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이륜차 제작증)에 수입인지 5건 15,000원 미소화, 취득세 미부과 1건 21,460원, 양도양수명서 1건 누락 및 125cc이상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수리시 등록면허세 7,500원 부과 누락

- ▶ 미소화한 수입인지 15,000원을 소화하고, 미부과한 취득세 21,460원과 등록면허세 7,500원에 대하여 부과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6. 영농안전장비 공급 부적정

- 2014년 영농안전장비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영농안전장비(농약방제복) 공급은 최근 3년간 지급된 사실이 없는 농가를 우선 배정하고 지급대장을 작성 관리(2년간 사후관리)하여 특정인에게 매년 연속으로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2013~2014년 영농안전장비(농약방제복)를 공급하면서 ◇◇1리 ○○○외 9명 대하여 2년 연속으로 공급(2014년 지급제외 대상)하여 영농안전장비 업무 소홀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7. 구제역 수시 예방접종 업무 소홀

- 2012년, 2013년 『월 구제역 수시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의거 매월 구제역 백신 수시 접종후에는 반드시 기록관리 유지 및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되어 있으나, 2012~2013년 매월 구제역 수시 예방접종 업무를 시행하면서 소 사육 농가에 백신을 배부하고 대상 농가에 대해 수령 확인서명을 받지 않아 구제역 방역업무 소홀
- ▶ 가축사육농가에 예방접종 백신을 배부하고 수령확인란에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8. 과실생산량 행정조사 실시 소홀

- 과실생산량은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356호, 2013.7.9.)에 의거 매년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3년도 과실생산량을 조사하면서 행정조사 실시요령에 따라 재배면적은 전수조사, 수량(10a당 생산량)은 표본농가(4농가)를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수량(생산량) 조사의 경우 표본농가를 정하지 않고 임의 조사
- ▶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